

인쇄물수출 영문용어집발간

서울인쇄센터

재단법인 서울인쇄센터(이사장 조정석)는 최근 인쇄물 수출시 사용되는 영문용어집 'International Business Basic'을 발행했다. 152쪽 분량의 이 책자에는 색분해와 제판, 인쇄, 후가공 및 제책, 대금결제, 운송과 선적 편으로 나누어 용어를 설명하고 있다. 이어 수출시 필요한 각종 양식을 담고 있다. 다음은 이 책에 수록된 인쇄물 수출 용어를 소개한다.



색분해 · 제판_ Prepress

Acid-free Paper_ 중성지

Bleeds_ 재단 여분

Color Separation_ 색분해(scanning)

Coated Paper_ 코팅지(표면 코팅처리가 된 용지)

C1S Paper_ Coated 1 Side Paper_ 단면코팅지, 편아트지

C2S Paper_ Coated 2 Side Paper_ 양면코팅지

Composed Film_ 화상 필름인쇄를 위해 따내기(Stripped) 준비가 된 필름

CRA(Camera Ready Art)_ 촬영원고

Dummy_ 가제본(인쇄물 실제 제품의 규격, 질감, 모양새 등을 사전에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Duotone_ 한 사진원고에서 나온 두가지 색(스크린 선의 각도가 다른 두가지 색상) 또는 이 두가지 색으로 인쇄, 주로 먹판+색판(Double tone)

Film Imposition_ 터잡기

Flat size_ 펼친 크기

Folded size_ 접은 크기

Gloss(y)_ 용지나 코팅 표면이 유광의 matte

Grain_ 용지 결

Halftones_ 원고의 연속적인 이미지를 망점의 모임으로 바꾼 것. 단색 망판을 가리킴.

LPI(Lines Per Inch)_ 필름의 선수

Matte_ 인쇄나 코팅 표면이 무광택의 gloss

Off registrarion_ 핀빠짐, Pin out

Press Proof_ 교정쇄

Register Mark_ 가늠표(돈보)

Reverse_ 반전(이미지의 좌우 반전, 망의 네가-포지 반전)

Trim Size_ 재단 사이즈

Wood Free Paper_ 모조지, 백상지

인쇄_ Press

Curl_ 말림, 종이의 휨 현상

Heat Transfer Press_ 열전사 인쇄

Hickeys_ 인쇄물에 생긴 딱지 얼룩

Picking_ 잉크의 점성에 의한 종이 뜯김

Run on_ 인쇄판을 떼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돌리는 분량

Sheet-fed_ 매엽 방식

Set-off_ 뒤문음

Signature_

1) 정합 순서 확인을 위해 인쇄 접지물의 제본면에 표시한 기호

2) 인쇄대수의 단위

Sticking_ 뒤문음이 심할 때 인쇄물이 서로 달라붙는 현상 (Blocking)

Web-fed_ 윤전방식

후가공 · 제책_ Post press(Finishing)

Accordion Fold_ 병풍접지(= zigzag fold)

Collating_ 정합, 조아이(날장의 정합을 의미, 접지물의 정합은 Gathering

Corrugated Board_ 골판지(단보루)

Die_ 도무송, 형압 등의 가공을 위한 판, 형, 가다.

Die Cutting_ 톰슨(Thompson), 도무송

Edge_ 책등(spine)을 제외하고 재단된 3면(책머리, 배, 밑)

End Sheet_ 면지

Flap_ 상자나 봉투 등의 뚜껑, 자켓(Dust Jacket)의 표지 안쪽으로 접혀 들어가는 부분

Folding(Fold)_ 접지

Gluing(Glue)_ 풀접착

Half Cut_ 반칼 도무송(kiss cut)

Hard Cover Binding_ 양장 제본

High Frequency Sealing_ 고주파 가공

Landscape Format_ 가로, 세로 중에서 짧은 쪽 제책(216×279mm=216mm쪽에 제책) (horizontal format)

Perfect Binding_ 무선제책

Perfect Binding with Smythe Sewn_ 반양장 제책

Perforation_ 미싱

Portrait Format_ 가로, 세로 중에서 긴 쪽 제책 (216×279mm=279mm쪽 제책) (= vertical format)

Pt. (point)_ 두께의 단위. 1pt=1/1000"

Round Back_ 둥근 책등, 환양장

Saddle Stitch_ 중철

Scoring(Score)_ 선 압(오시)

Scuffing_ 종이보풀

Section_ 접지물의 단위

Sewing_ 실매기, 사철

Spine_ 책등, 세네카(backbone, back)

Spiral Binding_ 나선제책, 스프링제책(coil binding)

Square Back_ 각진 책등, 각양장

Stiffener_ shrink wrapping 등에 사용되는 골판지 패드

Text_ 내지, 책의 본문

Twin Wire-O Binding_ 트윈링 제책

Concealed Wire-O_ 트윈링이 표지에 덮여 보이지 않는 제책

Semi-concealed Wire-O_ 트윈링이 표지를 뚫고 나와 일부 분만 보이는 제책

운송 · 선적_ Shipping

Air shipping_ 항공운송

AWB(Airway Bill)_ 항공운송장; 항공운송시 사용되는 증권

B/L(Bill of Lading)_ 선하증권; 해상운송시 화물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유가증권

CBM(Cubic Meters)_ 화물의 부피를 나타내는 단위로 해상운임(Ocean Freight)의 기준으로 화물의 가로, 세로, 높이를 1000mm(1m)로 곱한 수치.

예) 가로, 세로가 0.9m, 높이가 0.8m인 화물 = 0.9×0.9×0.8 = 0.648CB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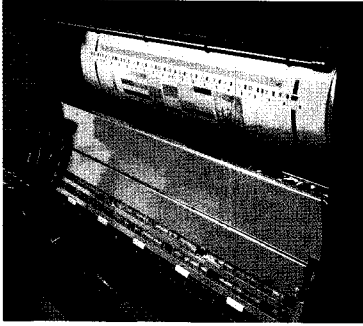
CFS(Container Freight Station)_ 컨테이너 작업장, 콘솔이 이뤄지는 곳.

Commercial Invoice_ 상업송장, seller가 buyer에 대해 발행하는 대금 청구서

Consignee_ 수하인, B/L상에 명시된 화물 수령인. 통상 수입상(buyer, importer)을 지칭하지만 수입상의 별도 지정인(대륙운송인 등)이 되는 경우도 있음.

Consolidation_ 화주가 다른 각각의 LCL cargo를 목적지가 같은 것 끼리 모아서 컨테이너에 혼적하는 작업. 통상 콘솔이라고 함.

Container door_ 컨테이너를 출고지, 혹은 도착지의 공장이



나 창고로 직접 불러 오는 것.

CY(Container Yard)_ 컨테이너 장치장; FCL cargo가 배에 실리기 전에 모이는 곳.

CY closing time_ CY에서 컨테이너 반입을 마감하는 시간. 시간을 넘기면 해당 선박에 선적할 수 없으므로 선적 스케줄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함. 통상 CFS에서의 작업 때문에 LCL의 closing time이 FCL보다 하루에서 이틀 앞섬.

Devanning_ 컨테이너에서 화물을 꺼내는 작업, 화물 분류 작업
ETA(Estimated Time of Arrival)_ 예정 도착 시간(해상, 항공 공통)

ETD(Estimated Time of Departure)_ 예정 출발 시간(해상, 항공 공통)

FCL(Full Container Load)_ 한 컨테이너에 가득 실린 양의 화물

Forwarder_ 운송을 위탁한 고객(화주)을 대리하여 화물을 통관, 입출고, 집하, 환적 또는 배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화주가 요구하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신속하게 운송하는 자,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운송주선인'이란 자기 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 하는 자'라고 규정한 것과 같이 자기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함으로써 상인이 되며, 물건 운송인인 이상 육상, 해상, 항공에 의한 운송중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운송이 개입된 해상-육상, 육상-항공, 해상-항공, 해상-육상-항공 등의 운송을 주선 또는 수행하며, 때로는 해상운송과

항공운송 중에서 한 가지 운송만 주선하거나 이행하기도 함. 이와 같이 Forwarder는 전통적인 대리인 개념으로서의 운송주선인 역할과 복합운송체제하의 운송 주체자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음.

Gross Weight_ 총중량. 순중량 +포장재 등의 기타 중량. 즉, 선적을 위한 포장재가 완료된 후의 중량

In-land trucking_ 내륙운송

LCL(Less than a Container Load)_ 컨테이너(CNTR.)보다 적은 양의 화물

Net Weight_ 순중량, 제품만의 중량

PO(Purchase Order)_ buyer가 seller에게 발행하는 주문서, 상품구매 확인(Order Confirmation)

S/R(Shipping Request)_ 선사에 선적을 의뢰하는 서류로 통상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와 수출신고필증이 사용됨

Shipping mark_ 수출입 통관시 물품을 구별하기 위해 포장박스 옆면에 표기된 내용으로 확인이라고도 함.(carton mark) 확인에는 목적국 또는 목적항, 제품명, 수량, 원산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Shipper_ 화주(貨主) 또는 하주(荷主)라고도 함. (seller, exporter, consignor)

Ton_ 1 LT (long ton/영국 톤) = 1,016.05kg = 2,2240lbs

1 ST (short ton / 미국 톤) = 907.18kg = 2,000lbs

1 MT (metric ton / kilo ton) = 1,000kg = 2,201.62lbs
Ocean Freight_ 해상 운임; 해상 운송시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 중 순수한 선박 기본 운임. FCL은 20', 40' CNTR. 별로, LCL은 CBM에 의해 부과되며, 지불주체가 seller인지 buyer인지가 화물인도조건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됨.

Other Charge_ 기타 비용, ocean freight 외에 발생하는 기타 비용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음.

DDC(Destination Delivery Charge; 도착지화물인도비용)_ 북미수출의 경우 도착항에 접안한 선박에서 CNTR.를 크레인 으로 들어올려 CY까지 운반하는데 발생하는 비용.

BAF(Bunker Adjustment Factor; 유류할증료)_ 선박의 주 연료인 벙커油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 하는 할증료. 항공운송의 FSC(Fuel Sur Charge)와 같음. (FAF; Fuel Adjustment Factor)

THC(Terminal Handling Charge)_ CY에 입고된 순간부터 선착까지(수입시 반대 순서)화물의 취급, 운반에 따르는 비용
C/T(Container Tax; 컨테이너 세)_ 개별 컨테이너에 부과하는 교통유발 분담금. LCL은 CBM당 부과.

CFS(Container Freight Station) Charge_ LCL의 경우 선적지 및 도착지의 CFS에서 이루어진 콘솔 및 분류작업에 따르는 비용. (FCL에는 발생되지 않는 비용)

Wharfage_ 부두 사용료; 항공운송의 공항사용료(Airport charge)와 같음.

D/C(Document Charge; 서류발급 수수료)_ 선사에서 선하 증권(B/L)과 화물인도지시서(D/O)의 발급 시 소요되는 행정비용

Psc(Peak Season Charge)_ 화물운송이 집중되는 시기(선사에서 필요시 결정)에 부과되는 할증료 노선별 시기별 적용여부가 다르므로 선사에 확인해야 함.

CAF(Currency Adjustment Factor; 통화 할증료)_ 운임표시 통화의 가치하락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한 할증료로 현재는 일부 유럽 국가행 FCL에 대해 발생하는 비용.

ACC(Alameda Corridor Charge)_ LA, Long Beach를 경유해서 내륙운송 되는 화물에 California 주에서 지방세로 징수하는 도심통과 비용. LA지역으로 선적할 경우에만 발생됨.

AMS(Automated Manifest System) Charge_ AMS관련 하목록 자동신고 시스템으로, 선적국의 선사 또는 forwarder

는 출항 24시간 전까지 미국입항 화물을 사전에 전자문서(EDI)로 미 세관에 신고해야하는 제도이며 AMS charge는 이 전자 문서 신고에 발생하는 수수료. 그러므로 미국행 화물 선적 시에 만 발생하는 비용. 선사나 forwarderdp 의해 신고가 끝난 후 서류상의 오류로 신고 내용을 수정해야 할 경우 'correction charge'가 발생 하므로 서류 작성 시에 주의해야 함.

CSI(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컨테이너 안전 협정)_ 미국 정부가 9.11테러 이후 살상무기등 위험 화물의 반입을 막기 위해 미국행 화물의 물동량을 기준으로 세계 주요 대미 수출선적 항구(한국, 싱가포르, 일본, 홍콩 등)와 체결한 협정. 2003년 11월부터 미국행 화물에 대한 24시간 사전신고제를 자체적으로 강화함과 동시에 미국에 입항하는 선사 및 forwarder에게 직접적으로 책임을 부여하기 시작했음. 24시간 사전신고제는 위험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사전 검사가 가능하도록 화물 선적 24시간 전에 선적 물품에 대한 정보를 미 세관에 신고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범칙금 부과 및 선박 억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미 세관으로 화물에 대한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선사, forwarder는 미 세관 적하 목록시스템(AMS)에 14개 주요 항목을 포함한 화물정보를 ED(Electronic Data Interchange)로 송신해야 함. 이에 국내외 선사들은 이미 자체적으로 AMS에 접속되어 있는 시스템을 확보하고 있어 큰 부담을 느끼고 있지 않지만, 자체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한 대부분의 forwarder들은 대행 수수료를 지불하고 대형선사의 대행 신고 서비스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그래서 발생하는 비용이 AMS charge.

EXW(Ex Work; 지정장소 공장인도조건)_ seller의 영업장 구내(공장이나 창고)에서 화물 인도하며, 이 후 발생하는 운송비, 통관비, 보험료 등의 제비용은 buyer의 부담.

FOD(Free on Board; 지정선적항 본선인도조건)_ seller의 화물에 대한 책임은 선박(본선)으로 오르는 난간까지. 여기서부터 발생하는 비용과 위험 부담은 buyer에게로 넘겨짐.

CFR(Cost and Freight; 지정목적항운임포함료 인도조건 =C&F)_ seller는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부담. 화물에 대한 책임은 본선에서 buyer에게로 넘겨짐.(운송비는 목적항까지, 위험 부담은 본선까지만)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지정목적지운임/보험료 포함 인도조건)_ seller는 지정된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



료를 부담. 화물의 위험부담은 선적시 본선 난간 통과시점에 buyer에게로 넘겨짐.

DDU(Delivery Duty Unpaid; 지정목적지 관세미지급 인도 조건) seller는 화물을 buyer가 지정한 창고까지의 해상운임, 보험, 내륙운송비 등의 제비용을 부담. 단 수입 통관시 관세, 통관수수료 등의 통관비용은 buyer가 부담.

DDP(Delivery Duty paid; 지정목적지 관세지급 인도조건) seller는 화물을 buyer가 지정한 창고까지의 해상운임, 보험, 내륙운송비 등의 제비용을 부담하며 수입 통관시 관세, 통관수수료 등의 통관비용도 모두 부담.

FIS(Free into Store; 창고반입 가격조건) DDP와 같은 개념. 주로 미국, 호주, 캐나다에서 사용됨.

대금결제_ Payment

D/A(Document against Acceptance)_ 인수인도 조건

D/D(Demand Draft)_ 은행수표(banker's check)

D/P(Document against Payment)_ 지급인도 조건

M/T(Mail Transfer)_ 우편환, 우편송금.

Remittance_ 송금(액)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_ 국제 은행간의 자금결제 통신망

T/T(Telegraphic Transfer)_ 전신환(wire transfer)

L/C(Letter of Credit)_ 신용장

Advising Bank_ 통지은행(=notifying bank), beneficiary의 거래은행

Amendment_ 신용장 상의 거래조건 변경

Applicant_ 개설의뢰인(=수입자, accountee, drawee, buyer)

Beneficiary_ 신용장의 수취인(=수출자, consignor, drawer, seller)

Irrevocable/Revocable L/C_ 취소 불능/가능 L/C(L/C에 "Revocable"이란 문구가 있을 때만 취소가능 신용장. 아무표시가 없으면 취소불능 신용장으로 취급)

Issuing Bank_ 개설은행(=opening bank), applicant의 거래은행

Negotiation_ 수출대금의 회수를 위한 선적서류의 매도(수출자)/매입(은행)

Sight L/C_ 수출자의 선적서류 매도와 동시에 신용장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

Usance L/C_ 신용장에 정해진 시기에 대금을 결제하는 외상 방식